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26호)

◦ 2001.11.14.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18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10.22

다. 상정일자 : 2001. 11.1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6회 임시회 제2차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가.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재등록 제도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정문화재 이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50%)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3. 검토결과

- 동 조례안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감면율은 50% 범위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조례안이 시달(행정자치부 세제13400-186, 2001. 7. 26호, 서울시 세정13400-796, 2001. 8. 3) 되었으며,
 - 2001. 9. 5부터 9. 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
 - 동 조례안은 현행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문화재로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등록문화재의 수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금액은?
- 답)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지정 문화재는 다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와 지방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으며 현재

등록문화재는 없고 지정문화재로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로 내곡동에 위치해 있는 현인능으로 연 144만 4,000원을 감면해주고 있고 또한 방배1동 청권사, 서울시가 지정한 것으로 상문고등학교내에 위치한 신도비, 대성사 사찰내에 있는 목불좌상, 원지동에 있는 석불입상등이 있으나 학교, 사찰내에 있는 것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며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토세와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수감소는 발생되지 않음.

질) 등록문화재의 면적은 얼마인가?

답) 현인능은 국유지가 1,083m², 사유지는 18만7,555m²이며 청권사에 있는 토지는 1만 3,901m², 건물은 342m²가 있음.

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할수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어느정도의 등록문화재가 발생할것인지와 이로 인한 지방세 경감액은?

답) 등록문화재는 주로 서울시내의 종로라든지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장으로는 단성사극장, 스카라극장, 구명동극립 극장이 있으며, 판매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이 있고, 숙박시설로 청일여관, 도남장 종교시설로는 구세군종관, 조계사 불교중앙회관, 교육시설로는 경기고등학교 본관, 금융기관에는 한빛은행 종로지점, 한국은행별관, 주거시설로 최남선고택등이 있으나 서초구는 신시가지로서 등록문화재로의 지정대상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질)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 및 지정방법은?

답) 등록요건은 50년이 경과되었느냐가 우선 대원칙으로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할수 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